

## IEA 가입과 석유비축



이 동 주

〈SK(주) 정책협력팀 부장〉

석유비축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위기대응대책임에도  
우리의 비축량은  
낮은 수준이다.

석유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석유 문명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1·2차 석유파동을 뼈아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으며 작년의 고유가로 인한 막대한 비용부담을 겪어 했던 우리로서는 생존과 산업발전을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석유수급대책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 석유 확인 매장량의 65%가 정치·종교적으로 불안한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의 76%에서 2010년 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 6위의 석유소비국인 우리나라의 높은 중동의존도에 비추어 볼 때,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위기시 대응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유도입선을 다양화하고 자주개발원유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비상시를 대비한 충분한 석유물량을 비축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상황에서는 단기간 안에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는 석유비축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비축량은 석유소비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석유류 비축은 1975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 수립한 생필품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1978년 수도권 서부지역에 G-1저장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82년 동부지역에 K-1을 건설하였다.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제정·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6년까지 정부비축 60일분 목표달성을 위해 2개의 원유기지 (T-1, U-2)건설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LPG 비축기지를 건설하였다. 1988년에 한국석유개발공사는 60일분의 비축물량목표를 달성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석유비축과 실제 비축분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90년대부터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에도 비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구 석유사업법 제16조의 2), 1993년 5월부터 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시행 중에 있다. 이때의 비축의무량은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의 30일 범위 안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량이었다. 이후 민간부문의 비축의무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현재는 연간 내수판매량의 38일 분의 비축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의 비축량은 29.5일분(2001년 1월 기준)에 불과하다.

1995년의 OECD 가입은 우리나라 비축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1995년 OECD에 가입하면서 그 산하기구인 IEA 가입의향서를 내고 그 동안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금년 5월 열릴 예정인 집행이사회에 앞서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낼 방침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1995년의 OECD 가입은  
우리나라 비축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도 IEA와 가입조건을 놓고 실무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IEA 가입으로 “석유수급 위기 때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참여로 얻는 효과도 적지 않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EA는 1973년과 1974년의 석유위기하에서 1974년 2월 미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을 계기로 11월 16개국이 국제에너지협약(IEP)을 맺고 출범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IEA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전세계 석유공급의 안정이 IEA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임은 물론이다. IEP하에서는 적어도 순수입 90일분에 상당하는 비상대비석유비축물량의 유지, 국가석유소비의 7%와 10%에 달하는 석유수요억제수단 마련, IEP 비상조치를 통한 석유할당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상 IEA 가입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부비축만을 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비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비축의무자가 과도한 비축의무량으로 인하여 재고 부담을 안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의 비축정책 시행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다수 외국 IEA 가입국의 경우 민간비축의무자의 자발적 비축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일본의 경우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의무적 비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비축과 시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스위스는 민간의무비축비용은 석유회사들로부터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민간회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의무적인 석유비축을 위해 대출보증이나 이자율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을 통

다수 외국 IEA 가입국의  
경우 민간비축의무자의  
자발적 비축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해 재정지원을 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비상시 석유회사들의 비축물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도 비축물량을 보유하는 회사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IEA 가입이 이루어지면 IEA 기준에 따른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비축증대 노력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비축의무량의 증대도 요구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민간업자의 부담도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제도의 취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성격의 석유를 비축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축은 정부만의 비축이어야 한다. 안보나 수급상의 이유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고유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이 일정정도 비축에 협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정부비축을 보조하는 수단에 그쳐야 할 것이며, 에특회계의 지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금지원, 금리보전 및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 재원의 조성취지에 따른 올바른 사용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는 부과금 면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나, 민간비축 전량에 대한 부과금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IEA 가입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향후 석유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석유수급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 석유공급불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EA 가입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향후 석유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석유수급대책이  
수립되어야한다